

의안번호	2203558
의 퇴 인	전진숙의원
회 답 일	2024.10.30.
추계번호	24C3035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8조의12조 (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-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, 인증,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·연계하여 처리·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-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스템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3항) - 시스템의 구축·운영,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(제4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58조의12조 (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(안 제58조의12)

- 개정안에 따라 「의료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, 인증,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·연계하여 처리·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(이하 “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”)을 구축·운영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－ 현행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법 제3조의4에 따른 ‘상급종합병원 지

정'과 제58조제1항에 따른 '의료기관 인증'이 있으며,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(이하 "평가원")의 e-평가시스템, 의료기관 인증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

- 이 밖에, 「장애인건강권법」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e-평가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의료기관 평가 주체와 시스템이 분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신규 시스템 구축 여부, 운영 전담 인력 확보 또는 위탁 등 세부사항이 정해져야 하나, 개정안은 이를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
 - 개정안에 따른 의료질평가통합정보시스템은 현행 평가원 또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나,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모든 평가 및 지정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경우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발생할 수 있음
 - 한편,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신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III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